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0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서미화・이수진・권칠승

윤종군 • 이용선 • 고민정

김문수 · 김영환 · 김남근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 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접구매 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4(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 구매 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화장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 "직접구매 화장품"이란 개</u>
	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
	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
	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
	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
	품을 말한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8조의3(직접구매 화장품에 대

<신 설>

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 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라 직접구매 화장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 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 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 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6조(벌칙) ① ------

느 하나에 ㅎ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०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

② (현행과 같음)